

#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## 1. 의결주문

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개정이유

- 최근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공탁금 보관은행의 출연금 상·하한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, 보관은행 신규 지정 및 변경이 있는 경우 보관은행별로 출연금 산정하도록 하여 적정 출연금 확보 및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의 안정적 유지를 위함

## 3. 주요내용

- 공탁출연금 상·하한 비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함  
(안 제19조제1항)
- 보관은행을 신규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출연금액 상·하한 제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(안 제19조제2항 신설)

## 4.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## 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##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항 단서 중 “100분의 20”을 “100분의 30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, 3항을 4항으로, 4항을 5항으로 한다.

- ② 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하고, 위와 같이 지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연도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에는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9조(출연금액의 확정 등)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의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<u>100분의 20</u>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9조(출연금액의 확정 등) ① 위원회는 매년 4월말까지 보관은행별로 전년도에 공탁금 운용수익금에서 이자비용과 포괄이윤 등을 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. 다만, 당해 연도에 납부할 출연금액은 전년도 출연금액의 <u>100분의 30</u>을 초과하여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없다.</p> <p>② <u>법원 신설의 사유로 보관은행 신규 지정이 있거나 보관은행 지정 취소 또는 공개방식에 따른 공탁금관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보관은행 지정이 있는 경우 각 법원의 보관은행별로 출연금액을 산정하고, 위와 같이 지정이 있는 날부터 당해 연도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에는 제1항의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③ ~ ⑤ (현행 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)</p>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880